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475호

「자동차등록령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자동차등록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39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2. 21. 시행)됨에 따라 자동차 변경·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처리(안 제22조)

-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

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

나.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(안 제24조, 제25조, 제31조)

-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

다.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(안 제31조)

### 3. 의견제출

「자동차등록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운영보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352호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

○ 전화(☎) 044-201-3860, 3861 / 팩스 044-201-5587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